政策討議시리즈 22
1984. 11.

畜産法施行令 改正方向

畜産法施行令 및 施行規則改正에 관한
協議會 綜合報告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本報告書는 1984년 10월 26일 當硏究院에서 개최한 「畜産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改正에 관한 協議會」의 主要 改正案과 그 討議內容을 綜合整理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축산업은 經濟發展과 國民所得의 향상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生産性 향상 및 經營의 多角化로 國際化時代에 부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편, 生産構造도 크게 변모하여 耕種農業 범주의 有畜農業 畜産에서 農家所得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成長農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하는 畜産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畜産法의 均等한 적용 및 畜産支援 施策의 효율성을 미루어 보아 무엇보다 畜産의 安定的 成長을 위한 制度의 확립이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畜産物 需給 및 價格安定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生産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등록 및 허가규정의 적절한 施行에 따라 축산발전과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최된 「畜産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 改正에 관한 協議會」는 各界의 專門家 및 學者 그리고 養畜家들을 모시고 畜産法 改正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책자가 畜産法施行令 및 施行規則의 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되길 원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協議會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참석자 및 協議會 개최와 報告書 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1984. 11.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榮 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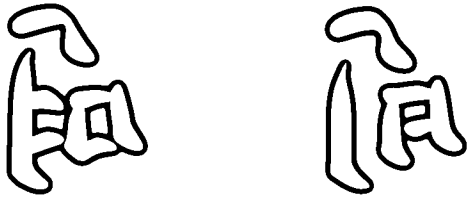

빈 면

目　　次

머 리 말

主題發表

畜產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主要改正(案) 檢討 ……金 炯 華…… 1

參考資料 : 畜產法 改正內容 …… 20

討議內容 …… 61

附　　錄

1. 開 會 辭 …… 96

2. 參加者名單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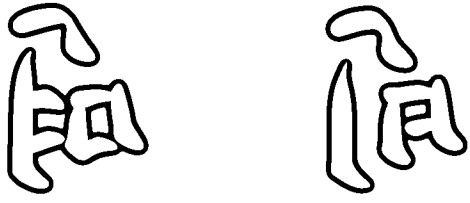

빈 면

畜産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主 要 改 正 (案) 檢 討

金 炯 華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Ⅰ. 畜産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의 改正背景

母法改正에 따른 下位法令의 補完改正

○ 畜産法改正 : '84.3月 國會發議, 7月 10日 議決, 8月 2日 公布

○ 改正事由

—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 副業畜産에 依한 農家所得 增大와 地力增進 誘導

— 家畜改良部門의 擴大强化

○ 主要骨子

— 一定規模以上의 種畜業者의 登錄

• 家畜改良과 畜産物需給 및 價格安定에 關한 必要措置 新設

— 一定規模以上의 畜産業者의 登錄 또는 許可

•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爲한 必要措置 新設

— 畜協 및 許可畜産業者 等에 對한 系列化 生産推進

• 農家所得增大와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寄與

— 畜産物의 需給調節을 爲한 必要措置 違反時 罰則 新設

• 超過飼育 賦課金의 賦課 및 登錄 또는 許可의 取消

○ 改正畜産法의 施行時期 : '85.2

主要家畜의 飼育動向

○ 韓(肉) 牛

		'78	'79	'80	'81	'82	'83	'84.6
計	戶 數	千戶 1,176	1,092	997	858	896	971	1,025
	頭 數	千頭 1,651	1,599	1,427	1,312	1,526	1,940	2,213
1 ～ 9 頭		千頭 1,606	1,536	1,355	1,216	1,409	1,786	2,012
10 ～ 29 〃		19	28	34	45	61	86	115
30 ～ 49 〃		5	9	10	15	18	23	30
50 頭 以 上		21	26	28	36	38	45	56

○ 젖 소

		'78	'79	'80	'81	'82	'83	'84.6
計	戶 數	千戶 16	17	22	18	22	30	34
	頭 數	千頭 136	163	207	194	228	275	301
1 ～ 9 頭		千頭 49	53	68	57	70	91	106
10 ～ 29 〃		51	64	84	83	98	119	129
30 ～ 49 〃		14	19	22	24	28	30	31
50 頭 以 上		22	27	33	30	32	35	35

○ 돼 지

		'78	'79	'80	'81	'82	'83	'84.6
計	戶 數	千戶 658	758	503	425	444	539	448
	頭 數	千頭 1,719	2,843	1,784	1,832	2,183	3,649	3,181
1～99 頭		千頭 1,383	2,182	1,178	1,159	1,382	2,314	1,924
100～299 〃		118	330	291	302	396	577	524
300～499 〃							149	156
500～999 〃		35	69	72	94	102	175	158
1,000～4,999〃		183	262	130	142	157	206	213
5,000～9,999〃				44	55	70	119	89
10,000 頭 以 上				69	80	76	109	117

○ 닭

		'78	'79	'80	'81	'82	'83	'84.6
計	戶 數	千戶 1,172	923	692	628	618	538	470
	首 數	千首 40,753	41,121	40,130	42,999	46,592	49,239	53,230
1～2,999 首		千首 15,098	13,302	11,096	11,045	9,978	7,458	8,366
3,000～4,999 〃		6,636	6,979	6,997	7,527	8,067	6,917	6,572
5,000～9,999 〃		8,325	8,792	9,613	10,369	11,999	11,637	12,551
10,000～29,999〃		10,694	12,148	7,711	8,369	10,177	13,768	15,034
30,000 首 以 上				4,713	5,689	6,371	9,459	10,707

Ⅱ. 畜産業의 登録 및 許可

1. 對 象 畜 種

○ 登　錄 : 韓(肉)牛, 젖소, 닭

— 飼育動向　把握 (닭은　孵化業　管理로　生産調節)

○ 登錄　및　許可 : 돼지

— 飼育動向　把握　및　生産調節

2. 登録 및 許可規模

○ 決定基準

— 畜種別　管理可能　頭數 (自家, 雇傭)

— 畜種別　所得水準 (農家, 都市)

— 生産調節　可能範圍 (돼지, 닭에　限함)

○ 決定原則

— 登錄 : 勞動力과　所得　等을　勘案한　農家專業規模　以上

〈勞動力〉 農家戶當　農業從事者　2.5 人～小企業從事者　20 人

〈所　得〉 農家戶當　最高所得 : 7,314 千원 ('81 ～ '83 平均)

都市勤勞者家口當　最高所得 : 13,111 千원 ('81 ～ '83 平均)

— 許　可 : 中企業 (從事者　21 人以上)의　管理可能規模　以上

※ 中・小企業者의　區分基準 (中小企業基本法　第 2 條)

小企業者 : 1 ～ 20 人　常時使用, 中企業者 : 21 ～ 300 人　以下

○ 登錄 및 許可規模 檢討

— 管理能力面

畜種別	1人當管理可能頭數	自家勞動(2.5人)飼育規模	登錄對象(2.5～20人)	許可對象
韓(肉)牛	30 頭	75 頭	75 頭以上	
젖소	15	38	38 〃	
돼지	150	375	375~3,000 頭	3,000 頭以上
産卵鷄	5,000 首	12,500	12,500 首以上	
肉鷄	8,000	20.000	20,000 〃	

— 所得面

畜種別	年間所得('81～'83平均)	所得規模		
		農家最高(7,314千원)到達頭數	都市家口最高(13,111千원)到達頭數	平均
韓(肉)牛	152千원/頭	48 頭	86	67
젖소	947 〃	8	14	11
돼지	45 〃	163	291	227
産卵鷄	1,239 원/首	5,900	10,580	8,240
肉鷄	299 〃	24,460	43,850	34,155

— 生産調節可能範圍面 : 全體頭數의 20 ~ 25 % 水準

畜種別	全體('84.6)		20 ~ 25 %	登錄對象	
	戶數	頭數	範圍頭數	規模	頭數
韓(肉)牛	1,025 千戶	2,213 千頭	498 千頭 (443~553)	5 頭以上	567 千頭
젖소	34	301	68 (60~75)	30	66
돼지	448	3,181	716 (636~795)	300	733
産卵鷄	467	32,264	7,260 千首 (6,453~8,066)	30,000 首以上	8,308 千首
肉鷄	3.8	19,966	4,493 (3,993~4,992)	10,000	7,632

— 關係規定面

畜種別	所得稅法上 副業規模	環境保全法上 汚染防止施設 : 企業	一般慣例		
			副業	專業	企業
韓(肉)牛	30 頭以上	240頭以上 (1,200㎡)	20 頭未滿	20~49 頭	50 頭以上
젖소	20	100 (1,200㎡)	10	10~49	50
돼지	150	500 (1,400㎡)	100	100~999	1,000
닭	3,000 首以下	—	1,000 首未滿	1,000~9,999首	10,000 首以上

〈登 錄 規 模〉

		韓(肉)牛	젖 소	돼 지	産卵鷄	肉 鷄
		頭			首	
管理能力面		75	38	375	12,500	20,000
所得面		67	11	227	8,240	34,155
生産調節面		-	30	300	30,000	10,000
關係規定面		30	20	150	3,000	3,000
一次調整	頭數	50	30	300	20,000	20,000
	對象戶數	462 戶	1,200	762	596	180

※ 檢討調整(案)

- 韓 牛 : 100 頭以上 (42 戶)
- 젖 소 : 50 〃 (338)
- 돼 지 : 總頭數와 母豚數를 竝行 規定

	1 案	2 案
	頭	
總頭數	300	500
母豚數	40	60
對象戶數	762	347

- 母豚은 繁殖豚 (初種付 또는 體重 130 *kg* 以上) 으로서 總頭數의 12 % 水準

- 닭 : 20,000 首以上 (計 776 戶, 産卵鷄 596 , 肉鷄 180)

〈許 可 規 模〉

돼 지 : 總頭數와 母豚數의 並行規定 및 許可上限線 設定

		1 案	2 案
許 可 規 模	總 頭 數	3,000 頭	5,000
	母 豚 數	300	500
上 限 規 模	總 頭 數	5,000	10,000
	母 豚 數	500	1,000

註 : ① 2案 : 規模의 經濟에 따른 省力化로 1人當 管理可能 頭數를 높여 許可規模 算定

② 母豚은 繁殖豚 (初種付 또는 體重 130 *kg*以上)으로서 總頭數의 10 %

〈許可上限線 排除〉

- 自家肉加工場의 原料肉 (包裝肉原料用은 除外)調達用 飼育豚 (50 %)
- 輸出用 飼育豚 (超過飼育分)
- 系列化 生產을 爲한 3元交雜 仔豚 및 그 生產用 飼育豚 (超過飼育分)

— 다만 生產仔豚의 50 %以上을 系列化(契約)로 育成·肥育할 때에 限함.

· 系列化의 要件 : 3元交雜 仔豚의 農家提供 및 肥育豚 收集出荷

〈豫想되는 問題點〉

① 肉加工場을 保有한 大企業이 自體 生産豚을 肉加工 原料肉으로 活用함으로서 飼育規模 規制의 效果가 減少됨. (例 : 第一製糖)

② 養豚場과 肉加工場의 法人體가 다를 境遇 自家肉加工場으로의 認定至難 (例 : 韓國햄, 남부햄)

③ 輸出用 飼肉豚의 境遇 相對國의 輸入禁止, 價格 不合理 等으로 輸出 不可 및 自體 備蓄至難 事例가 있을 수 있음.

④ 許可上限線 規制時 旣存業者는 保護하고 新規業者를 抑制하는 結果招來 憂慮

⑤ 旣存業者를 許可上限線 以下로 減縮시킬 境遇 施設剩餘 및 私有財産權 侵害의 非難 憂慮

〈參 考〉

登錄 및 許可對象戶數와 頭數推定(84.6 現在)

畜種別			戶數			頭數		
			全體	對象	比率	全體	對象	比率
			千戶	戶	%	千頭	千頭	%
韓(肉)牛			1,025	42	-	2,213	14	0.6
젖소			34	338	1.0	301	35	11.6
돼지	登錄	1 案	448	762	0.2	3,181	469	14.7
		2 案	448	347	0.1	3,181	371	11.7
	許可	1 案	448	31	-	3,181	264	8.3
		2 案	448	20	-	3,181	206	6.5
닭	産卵鷄		467	596	0.1	32,264	10,932	33.9
	肉鷄		3.8	180	4.7	19,966	1,414	7.1

3. 登録 및 許可의 施設基準

畜 種 別	施 設 基 準
韓 (肉) 牛	○ 牛 舍 : 頭當平均 5 ㎡ (1.5 坪) 以上 ○ 草 地 : 頭當 0.4 ha 以上 또는 飼料圃 (畜裏作包含) 0.2 ha 以上 ○ 越冬用 粗飼料貯藏에 必要한 싸이로 및 乾草倉庫 ○ 防疫 및 衛生을 爲한 施設 및 裝備
젖 소	○ 牛舍 및 附屬舍 : 頭當平均 13 ㎡ (4 坪) 以上 ○ 草 地 : 頭當草地 0.5 ha 또는 飼料圃 (畜裏作包含) 0.3 ha 以上 다만, 頭當 0.2ha 以上의 草地確保 ○ 越冬用 粗飼料貯藏에 必要한 싸이로 및 乾草倉庫 ○ 防疫 및 衛生을 爲한 施設 및 裝備
돼 지	○ 豚 舍 : 頭當平均 2.5 ㎡ (0.7 坪) 以上 — 仔豚 : 0.2 ㎡, 育成豚 2.0 , 肥育豚 2.8 , 母豚 6.5 ○ 防疫 및 衛生을 爲한 施設 및 裝備
닭	○ 鷄舍 (100 首當) : 産卵鷄 13 ㎡ (4 坪), 肉鷄 10 ㎡ (3 坪) 以上 ○ 防疫 및 衛生을 爲한 施設 및 裝備 ○ 糞尿 및 汚物의 流出防止 施設

Ⅲ. 種畜業의 登録

1. 登録業種 : 種豚業, 種鷄業.

2. 種畜業의 登録基準

		基準	備考
種豚場	一般種豚場	○ 血統登錄된 種牝豚 20頭以上 保有 ○ 血統登錄된 種牡豚 保有	
	優良種豚場	○ 血統登錄된 20頭以上의 種牝豚 保有 — 保有種牝豚의 50%以上 公認 能力 檢定에 合格 ○ 血統登錄된 種牡豚 保有 — 保有種牡豚의 10%以上 公認能力 檢定에 合格	
種鷄場		○ 種鷄 1,000首以上	現行登錄基準

3. 登録對豫頭数 ('84. 8 現在)

	全體頭數 (A)	對象頭數 (B)	比率 (B/A)
種豚業	461千頭	57	12.4%
種鷄業	2,138千首	1,131	52.9

4. 種畜業의 施設基準

業 種 別	施 設 基 準
種 豚 業	ㅇ 豚 舍(頭當) 種牡豚 : 13,2 ㎡(4坪) 種牝豚 : 9.9 ㎡(3坪) 育成豚 : 成豚의 50% 該當面積 ㅇ 別途의 隔離豚舍 및 分娩豚舍 適宜面積 ㅇ 運動場 : 成豚基準 頭當 3坪 ㅇ 出入者 및 出入車輛의 消毒施設 및 消毒衛生裝備 ㅇ 飼料圃 : 頭當 30坪以上 ㅇ 所定의 看板
種 鷄 業	ㅇ 系統別 區分飼育 施設 ㅇ 世代別 區分飼育 鷄舍 ㅇ 出入者 및 出入車輛의 消毒施設 및 消毒衛生裝備 ㅇ 病鷄의 隔離飼育 및 汚染物 燒却施設 ㅇ 堅固한 耐久性 資材의 鷄舍 및 鷄糞倉庫 ㅇ 所定의 看板 (現行基準)

〈参考〉

種豚生産 및 配付體系 確立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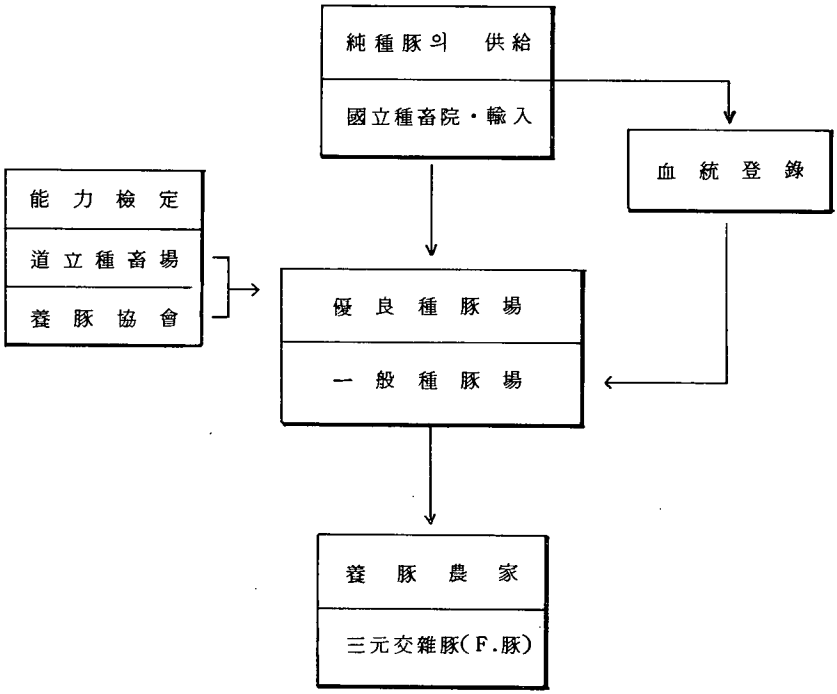

Ⅳ. 超過飼育賦課金

1. 賦課原因行爲

- 登錄 또는 許可基準 超過 飼育時
- 申告 또는 承認없이 營業을 貸貸, 讓渡, 施設變更時
- 休·廢業後 申告 또는 承認없이 營業再開時
- 畜產物 需給調節을 爲한 生產減縮 不應時

2. 年間 飼育計劃書의 提出

- 提出時間 : 前年度 10月中
- 提 出 處 : 登錄 및 許可機關

3. 超過飼育의 確認

- 確認時期
  - 定期 : 韓(肉)牛 및 젖소 1回(9月), 돼지, 닭 2回(3月, 9月)
  - 隨時 : 需給 및 價格安定을 爲하여 必要한 때.
- 確認主體 : 市·道知事

4. 超過頭數의 算定基準等

- 超過頭數 : 登錄 및 許可 또는 減縮命令基準 超過頭數
  돼지 : 母豚 및 總頭數 基準
- 賦課金 賦課對象 : 許容範圍 超過頭數
  超過頭數의 規格 : 成畜으로 看做
- 賦課基準額 : 超過飼育 確認 前半期 販賣價額
  - 畜協中央會의 畜產物 調査價格 適用
  - 種豚 : 國立種畜院의 種豚(20 *kg*基準)分讓價格 + 超過體重(*kg*)
    × 畜協中央會의 畜產物 調査價格(肉豚*kg*當 價格)

〈附 表〉

1. 農家 및 都市家計 所得('81 ~ '83 平均)

區 分	農家所得			都市勤勞者 家口所得		
	最 高	最 低	平 均	最 高	最 低	平 均
家口所得	7,314 千원	3,062	4,427	13,111	722	3,848
家口員數	5.85 人	4.17	5.00	5.19	3.94	4.42
就業人數	3.11 人	2.05	2.51	1.35	1.10	1.28
就業1人當所得	2,352 千원	1,494	1,764	9,712	657	3,006
最大家口員所得	13,759千원	6,230	8,820	50,405	2,589	13,287

資 料 : 農家經濟調査結果 農水産部

都市家計 年報 經濟企劃院

2．畜種別 頭當 年間所得

畜種別 \ 年度	'81	'82	'83	平年
	원	원	원	원
肥育牛	151,794	186,101	153,450	163,782
繁殖牛	364,884	496,092	542,189	467,722
乳牛	752,830	1,005,158	1,085,015	947,668
肥育豚	50,427	41,522	43,803	45,251
繁殖豚	373,403	344,556	131,302	283,087
産卵鷄(首當)	-	774	1,703	1,239
肉鷄(首當)	142	143	612	299

資料：畜産物 生産費 調査 報告(畜協中央會)

3．規模別　飼育頭數　對比　母豚比率（'84.6 現在）

規模別	飼育頭數	繁殖活用豚		繁殖豚및候補豚	
		頭數	比率	頭數	比率
	頭	頭	%	頭	%
1～9 頭	759,630	129,770	17.1	148,250	19.5
10～19 〃	459,830	53,500	11.6	56,990	12.4
20～49 〃	304,601	40,422	13.3	43,847	14.4
50～99 〃	399,956	47,933	12.0	52,014	13.0
100～299 〃	524,116	63,299	12.0	68,868	13.2
300～499 〃	155,931	17,876	11.5	19,672	12.6
500～999 〃	158,064	19,151	12.1	20,675	13.1
1,000頭以上	419,054	47,440	11.3	50,945	12.2
計	3,181,182	419,391	13.2	461,261	14.5

参考資料

畜産法

(改正内容)

畜 産 法

1977.12.19 法律第 3024 號全文改正
改正 1981. 3. 7 法律第 3382 號
1982.12.31 法律第 3603 號
1984. 7.10

現 行	改 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家畜의 改良 增殖과 보호등 家畜振興과 畜産物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1 條**(目的)(現行과 같음)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畜"이라 함은 飼養하는 소·말·양·돼지·家禽 기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짐승을 말한다.	1. (現行과 같음)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家畜으로서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 檢査에 合格된 家畜과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된 家畜을 말한다.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 家畜으로서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檢査에 合格된 家畜과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家畜 또는 檢定을 받은 家畜을 말한다.
3. "畜産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肉·乳·卵·꿀과 이들의 加工	3.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品·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原毛 기타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生產物을 말한다.	
4. "種鷄業"이라 함은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種卵을 生產하기 爲하여 種鷄를 飼育하는 業을 말한다.	4. "種畜業"이라 함은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繁殖用 家畜 또는 種卵을 生產·販賣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以上의 種畜을 飼育하는 業을 말한다.
5. "孵化業"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人工孵化施設에 의하여 初生雛를 生產하는 業을 말한다.	5. "孵化業"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人工孵化施設에 의하여 병아리를 生產하는 業을 말한다.
〈新 設〉	6. "畜產業"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以上의 家畜을 飼育하는 業을 말한다.
第3條(畜產振興施策의 講究) ①農水產部長官은 家畜의 改良·增殖·보호·畜產物 및 飼料의 需給調節, 畜產物의 流通 및 價格安定, 家畜衛生 등 畜產振興에 관하여 必要한 計劃과 施策을 綜合的으로 樹立·實施한다.	第3條(畜產振興施策의 講究)(現行과 같음)
②農水產部長官은 畜產物과 飼料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畜產物 및 飼料의 品目別 基準價格을 設定·告示하	

現 行	改 正
여 그 基準價格의 維持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행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2章 種 畜	
第4條(種畜檢査)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는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定期的으로 種畜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第4條(種畜의 檢査)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種畜檢査를 實施한다.
第5條(種畜의 登錄과 檢定) 農水產部長官은 種畜의 血統保全과 資質改良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畜의 登錄 또는 檢定을 하게 할 수 있다.	第5條(種畜의 登錄과 檢定)(現行과 같음)
〈新 設〉	第5條의2(種畜等의 輸出入許可)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種畜·種畜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家畜 또는 家畜人工授精用 精液(以下 "精液"이라 한다)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現 行	改 正
第6條(種畜證明書)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種畜檢查를 實施한 機關의 長은 種畜檢查에 合格된 家畜과 種畜用으로 配付하는 家畜에 대하여는 그 飼養者에게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畜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6條(種畜證明書) ①(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하는 種畜證明書의 有效期間은 檢查日로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種畜 生產機關에서 配付한 家畜에 對한 種畜證明書의 有效期間은 그 發給日로부터 道知事가 施行하는 다음 定期檢查日까지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하는 種畜證明書의 有效期間은 農水產部令으로 定한다.
〈新 設〉	第2章의2 種畜業·孵化業 및 畜產業
第7條(授精의 制限) 道知事는 種畜檢查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檢查에 不合格된 牡畜 또는 疾患에 걸린 種牡畜에 대하여는 牡畜에의 授精을 制限할 수 있다.	第7條(授精의 制限) (現行과 같음)
第8條(保護種畜등의 指定) ①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家畜의 改良과 보호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護種畜을 指定할 수 있다.	第8條(保護種畜등의 指定)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②道知事는 種畜의 보호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畜의 仔畜중에서 將來 種畜으로서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하 "候補種畜"이라 한다)을 指定하여 그 育成에 관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種畜을 指定한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準하여 그 仔畜의 飼育者에게 候補種畜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9條(保護地域의 指定)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家畜의 改良과 보호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護地域 및 당해 保護地域안에서 보호할 家畜을 指定할 수 있다.	第9條(保護地域의 指定) (現行과같음)
第10條(保護料의 支給)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保護種畜과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地域안의 保護家畜에 대하여 保護料를 支給하거나 기타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0條(保護料의 支給) (現行과 같음)
第11條(去勢) ①道知事는 家畜의 改良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	第11條(去勢)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는 家畜飼養者에 대하여 種畜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檢査에 不合格된 牡畜의 去勢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候補種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去勢로 인하여 斃死한 家畜에 대하여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12條(種畜의 貸與) 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家畜의 改良·增殖과 飼養을 奬勵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種畜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第12條(種畜의 貸與)(現行과 같음)
第13條(種鷄業의 登錄 및 孵化業의 許可) ①種鷄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種鷄檢査를 거친 後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13條(種畜業의 登錄 및 孵化業의 許可) ①種畜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孵化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現行과 같음)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

現 行	改 正
鷄業의 登錄基準 및 孵化業의 許可基準은 農水産部令으로 定한다.	畜業의 登錄基準 및 孵化業의 許可基準은 農水産部令으로 定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主體가 되거나 敎育機關이 實驗·實習이나 硏究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畜業의 登錄을 한 者(以下 "種畜業者"라 한다)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의 許可를 받은 者(以下 "孵化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 또는 貸貸하거나 그 施設中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施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 設〉	⑤種畜業者 또는 孵化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日以內에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 設〉	⑥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家畜의 改良과 畜産物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種畜業者 또는 孵化業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 種畜의 品種別 飼育狀況과 生産計劃書의 提出 2. 種畜을 利用한 家畜의 生産·飼育 및 出荷의 調節 3. 種畜을 利用하여 生産한 家畜의 販賣方法 및 販賣價格에 關한 事項

現 行	改 正
〈新 設〉	⑦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生産하는 種畜은 種畜業者에게 優先的으로 供給한다.
〈新 設〉	⑧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第4條·第5條 및 第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種畜의 檢査·登錄·檢定 및 輸出入의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 設〉	⑨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主體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 設〉	第13條의 2(畜産業의 登錄 또는 許可) ①畜産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畜産業의 경우에는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의 登錄基準과 許可基準은 農水産部令으로 定한다.

現 行	改 正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業의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以下 "畜産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 또는 貸貸하거나 그 施設中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施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畜産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고, 畜産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畜産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日以內에 畜産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는 道知事에게, 畜産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農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農水産部長官은 畜産物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 또는 承認을 申請한 者의 施設, 其他事業의

現 行	改 正
	規模를 制限하여 許可 또는 承認을 할 수 있다.
	⑥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畜產物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畜產業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 家畜의 飼育狀況과 生產計劃書의 提出
	2. 家畜의 生產·飼育 및 出荷의 調節
	3. 家畜 또는 畜產物의 備蓄·販賣·其他 處理方法에 關한 事項
〈新 設〉	第13條의 3(家畜의 系列化 生產) 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農家所得增大와 畜產物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對하여 家畜을 飼育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者와 契約에 의한 生產을 하게 할 수 있다.
	1. 畜產業協同組合
	2. 第13條의 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畜產業者
	3. 其他 農水產部長官이 指定하는 者

現 行	改 正
第 14 條 (登錄・許可의 取消等) ① 道知事는 種鷄業의 登錄을 한 者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第 14 條 (減縮命令, 超過飼育 賦課金, 登錄・許可의 取消等) ① 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種畜業者 또는 畜產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때에는 飼育家畜의 減縮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飼育할 수 있는 家畜의 最高限度, 超過頭數의 減縮方法을 定하여 命하되, 必要한 경우에는 一定한 期間동안만 減縮하게 할 수 있다. 1. 不正한 方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許可를 받은 때 2. 第13條第3項 또는 第13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 또는 許可基準에 違反한 때 3. 第13條第4項 및 第13條의 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그 營業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施設을 變更한 때 4. 第13條第5項 및 第13條의 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를 한 때 5. 第13條第6項 및 第13條의 2第

現 行	改 正
	6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道知事는 孵化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停止를 命할수 있다.	②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超過飼育賦課金을 納付할 것을 命하되, 超過飼育賦課金을 賦課할 수 있는 期間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新 設〉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飼育賦課金은 家畜의 種類 超過飼育頭數 및 飼育期間에 따라 算定하되 그 算定基準, 算定方法, 其他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 設〉	④ 超過飼育賦課金의 徵收 및 滯納處分에 관하여는 國稅 또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新 設〉	⑤ 超過飼育賦課金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振興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新 設〉	⑥ 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超過飼育賦課金의 徵收對象이 된 種畜業者 또는 畜產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이 經過하여도 減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한다. ⑦ 道知事는 孵化業者가 다음 各號중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고 第3號내지 第5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을 때 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未達한 때 3.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그 營業을 讓渡 또는 賃貸하거나 그 施設을 變更한 때 4.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를 한 때 5. 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命

現 行	改 正
	令에 違反한 때
〈新 設〉	⑧ 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許可가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間 當該業의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第15條(種鷄業과 孵化業의 監督) 道知事는 種鷄業의 登錄을 한 者 또는 孵化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 그 施設의 改善, 家禽의 改良 및 生産調節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과 生産 및 供給에 關한 報告를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과 帳簿, 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種畜業·孵化業 또는 畜産業의 監督)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種畜業者·孵化業者·畜産業者 또는 其他 家畜을 飼育하는 者에 對하여 그 施設의 改善과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과 帳簿, 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人工授精師의 免許) ① 家畜人工授精師(이하 "授精師"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格이 있는 者로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第16條(人工授精師의 免許) ①(現行과 같음)
1. 大學, 實業高等專門學校 또는 專門學校의 畜産系學科를 卒業한者로서 家畜繁殖學科目을 履修한 者	1. 大學 또는 專門大學의 畜産系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家畜繁殖學 또는 人工授精科目을 履修한 者
2. 獸醫師	2.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3.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가 施行하는 授精師試驗에 合格한 者	3. (現行과 같음)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授精師가 될 수 없다.	② (現行과 같음)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精神病疾患者 또는 痲藥中毒者	
3. 身體의 障害로 인하여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者	
第 17 條(授精師의 免許取消등) 道知事는 授精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 17 條(授精師의 免許取消등)(現行과 같음)
1. 第 16 條第 2 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現行과 같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第 18 條 또는 第 22 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新 設〉	3. 第 23 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第 18 條(人工授精所의 登錄 등) ①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라 한	第 18 條(人工授精所의 登錄 等) ① 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

現 行	改 正
다)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한다)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開設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授精所가 아니면 家畜人工授精所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現行과 같음)
第19條(授精所의 登錄取消등)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授精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19條**(授精所의 登錄取消등)(現行과 같음)
1. 施設이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1. (現行과 같음)
2. 授精所를 開設한 授精師의 免許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때	2.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3.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3. 〈削 除〉
第20條(家畜人工授精師 및 精液供給의 制限) ① 授精師가 아닌 者는 家畜人工授精用精液(以下 "精液"이라 한다)을 採取·處理하거나 家畜人工授精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으로 必要한 경우와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0條(家畜人工授精師 및 精液供給의 制限) ① 授精師가 아닌 者는 精液을 採取 處理하거나 家畜人工授精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으로 必要한 경우와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授精所가 採取·處理한 精液이 아니면 이를 他人에게 供給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授精所(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畜産協同組合中央會가 開設한 授精所를 包含한다)가 採取·處理한 精液 또는 輸入한 精液이 아니면 이를 他人에게 供給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精液 및 人工授精證明書) ①精	第21條(精液 및 人工授精證明書)(現

現 行	改 正
液을 採取·처리하여 供給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精液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 授精師가 家畜人工授精을 한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行과 같음)
第22條(精液의 使用制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精液은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하거나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이나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證明書가 없는 精液 2.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未達하는 精液	第22條(精液의 使用制限)(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第23條(家畜人工授精의 監督) 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授精師 또는 授精所에 대하여 家畜의 改良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23條(家畜人工授精의 監督) (現行과 같음)
第4章 도축의 規制	第4章 도축의 規制
第24條(屠畜의 制限과 금지) ①農水産部長官은 家畜의 보호·育成과 需給調節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別·年齡 및 利用目的에 따라 家畜의 屠殺을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 또는 금지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畜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學術試驗用으로 必要한 家畜 2. 動物藥品 製造用으로 必要한 家畜으로서 道知事의 承認을 얻은 家畜	第24條(屠畜의 制限과 금지)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3. 負傷·難産 또는 산욕마비가 된 家畜이나 創傷性 心嚢炎 또는 急性 鼓脹症등의 患畜으로서 獸醫師의 診斷에 의하여 治療의 可望이 없다고 인정된 家畜	
4. 不妊·畸型등으로 인하여 獸醫師의 診斷에 의하여 利用價値가 없다고 인정된 家畜	
第5章 家畜市場	**第5章 家畜市場**
第25條(家畜市場의 開設등) ①家畜市場은 市長(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郡守가 아니면 이를 開設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家畜市場의 開設등) ①家畜市場은 市長(서울特別市長과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郡守가 아니면 이를 開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家畜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市場業務規程을 정하여 道知事의 開設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家畜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市場業務規程을 정하여 道知事의 開設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받은 者(이하 "開設者"라 한다)가 그 業務規程과 家畜市場의 位置 및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 業務管理者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받은 者(이하 "開設者"라 한다)가 그 業務規程과 家畜市場의 位置 및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 業務管理者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現 行	改 正
④開設者가 家畜市場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遲滯없이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開設者가 家畜市場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遲滯없이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26 條(家畜市場의 業務管理者) ①開設者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中에서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家畜市場의 業務管理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業務管理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管理者"라 한다)가 變更된 때에는 變更後의 管理者가 家畜市場의 運營으로 발생한 資產을 引受하고 그 業務를 承繼한다. ③家畜市場이 廢止된 때에는 開設者가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指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가 그 資產을 引受하고 必要한 業務를 承繼한다.	第 26 條(家畜市場의 業務管理者) (現行과 같음)
第 27 條(家畜市場의 去來家畜) ①家畜市場에서 去來하는 家畜의 種類는 農水產部令으로 정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은 家畜市場 밖에서 去來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27 條(家畜市場의 去來家畜) (現行과 같음)
第 28 條(家畜의 去來方法) 家畜市場	第 28 條(家畜의 去來方法) (現行과

現 行	改 正
에서의 家畜의 去來는 競賣 또는 仲介의 方法에 의한다.	같음)
第29條(談合行爲등의 禁止등) 家畜市場에서 家畜을 去來하는 者는 公正한 價格의 成立을 沮害하거나 부당한 利益을 얻을 目的으로 談合하거나 家畜에 대하여 非正常的인 給養 또는 管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開設者 및 管理者는 家畜市場의 秩序를 維持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正行爲를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9條(談合行爲등의 禁止등) (現行과 같음)
第30條(代金의 決濟) 家畜市場에서 이루어지는 家畜賣買代金의 決濟는 당해 家畜市場의 管理者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第30條(代金의 決濟) (現行과 같음)
第31條(家畜賣買證明書) 開設者는 家畜市場에서 家畜의 賣買가 成立된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賣買證明書를 賣買當事者에게 發給하여야 한다.	第31條(家畜賣買證明書) (現行과 같음)
第32條(家畜賣買手數料등) ①家畜市場에서 家畜의 賣買가 成立된 때에는	第32條(家畜賣買手數料등)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家畜의 買受人은 당해 賣買價格의 100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農水產部長官이 정하는 家畜賣買手數料를 管理者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②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賣買手數料收入을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家畜의 改良·增殖·防疫 및 家畜共濟 2. 家畜市場의 運營·管理 3. 家畜市場의 施設 및 去來制度의 改善 4. 기타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事業 ③管理者는 家畜賣買手數料등 家畜市場의 業務收入은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經理와 區分하여 家畜市場管理計定을 設置하고 運營하여야 하며, 每計年度別로 收支豫算을 編成하여야 한다. ④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 管理計定運營의 地域的 均衡을 기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賣買手數料收	

現 行	改 正
入의 一部를 調節·運用할 수 있다. ⑤家畜市場의 業務收入에 따른 豫算의 編成과 事業管理등 必要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家畜市場의 施設) ①開設者는 家畜市場의 運營에 必要한 基本施設을 設置·維持하여야 하며, 管理者로 하여금 家畜市場의 施設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②家畜市場의 業務收入으로 家畜市場에 設置한 施設등은 開設者에게 歸屬한다.	第33條(家畜市場의 施設) (現行과 같음)
第34條(家畜市場의 監督) ①開設者 또는 道知事는 管理者에 대하여 家畜市場의 業務管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道知事는 家畜市場의 運營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畜市場의 位置·構造·設備 또는 家畜市場業務規程의 變更 기타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③道知事는 開設者 또는 管理者가 이 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할 때에는 家畜市場의 開設許	第34條(家畜市場의 監督)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可를 取消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者의 指定을 取消하게 할 수 있다.	
第6章 家畜共濟	**第6章 家畜共濟**
第35條(共濟團體의 指定) 農水產部長官은 家畜飼養者의 不意의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家畜共濟團體를 指定하여 家畜共濟事業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第35條**(共濟團體의 指定) (現行과 같음)
第36條(共濟의 種類) 家畜共濟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家畜買買手數料 收入을 財源으로 하는 一般家畜共濟와 家畜飼養者가 納入하는 共濟料를 財源으로 하는 特殊家畜共濟의 2種으로한다.	**第36條**(共濟의 種類) (現行과 같음)
第37條(共濟規程) ①一般家畜共濟事業의 家畜共濟規程은 農水產部令으로 정한다.	**第37條**(共濟規程) (現行과 같음)
②家畜共濟團體는 特殊家畜共濟事業을 實施함에 있어서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共濟規程을 정하여 農水產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8條**(共濟對象家畜)(現行과 같음)
第38條(共濟對象家畜) ①一般家畜共濟의 對象家畜은 소로 하되 그 種類와 범위는 農水產部令으로 정한다.	
②特殊家畜共濟의 對象家畜은 소·말·양·돼지 및 家禽으로 한다.	

現 行	改 正
第 39 條 (共濟金의 支給) ①共濟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支給한다. 1. 斃死 2. 다른 法令에 의한 屠殺處分 3. 第 24 條第 2 項第 3 號의 規定에 의한 家畜의 屠殺 ②家畜共濟에 加入된 家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共濟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共濟金을 納入한 날로부터 30 日이내에 斃死한 때 2. 飼養者가 故意로 家畜共濟團體의 損害防止를 위한 合理的인 管理指導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斃死한 때 3. 당해 家畜에 관하여 家畜共濟團體에 申告된 事實이 虛僞임이 확인된 때	第 39 條 (共濟金의 支給) (現行과 같음)
第 40 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特殊家畜共濟에 加入된 家畜의 讓受人은 家畜共濟團體의 承認을 얻어 讓渡人에 屬하였던 家畜共濟에 관한 모든 權利義務를	第 40 條 (權利義務의 承繼)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承繼할 수 있다. ②家畜共濟團體는 정당한 理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1條(家畜共濟團體의 監督) ①農水産部長官은 家畜共濟團體에 대하여 家畜共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農水産部長官은 家畜共濟團體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家畜共濟團體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41條**(家畜共濟團體의 監督) (現行과 같음)
第7章 畜産振興基金	**第7章 畜産振興基金**
第42條(畜産振興基金의 設置) ①畜産振興에 必要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畜産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政府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第1項의 基金에 補助할 수 있다.	**第42條**(畜産振興基金의 設置) (現行과 같음)
第43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新 設〉	**第43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超過 飼育

現 行	改 正
	賦課金
1. 第 4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助金	2. (現行과 같음)
2. 第 44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	3. (現行과 같음)
3. 第 44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飼料原料의 輸入價格差額 納入金	4. (現行과 같음)
4. 第 44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馬事會로부터의 納入金	5. (現行과 같음)
5. 第 44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畜産物의 販賣收益 納入金	6. (現行과 같음)
〈新 設〉	7. 第 44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家畜의 國內價格 差額納入金
6. 第 44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8. 第 44 條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7. 團體 또는 個人으로부터의 出捐金	9. (現行과 같음)
8. 基金의 運營에서 생기는 收益金	10. (現行과 같음)
第 44 條(基金의 造成) ①畜産物加工處理法 第 2 條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의 經營者는 屠畜場에서 處理된 畜産物을 引受하는 者로부터 그 代金의 100 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農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附加金을 徵收하여 第 45 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 44 條(基金의 造成) ①~④(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者(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에게 納付하여야 하며, 乳處理場·乳加工場 및 獸肉加工場의 經營者는 處理·加工한 原乳를 受乳하거나 獸畜을 屠畜한 때에는 그 代金의 100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農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附加金을 基金管理者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②農水産部長官은 輸入하는 飼料原料중 必要한 品目의 原料別 安定基準價格을 정하여 그 이하의 價格으로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 輸入價格과 安定基準價格과의 差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基金에 納入하게 할 수 있으며, 安定基準價格을 초과하는 價格으로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 輸入價格과 安定基準價格과의 差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基金에서 補塡하게 할 수 있다. ③韓國馬事會長은 韓國馬事會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積立金중에서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金額을 基金管理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④國外에서 肉類와 乳類를 輸入하여 販	

現 行	改 正
賣하는 者 中 農水產部長官이 지정하는 者는 그 販賣收益金중에서 農水產部長官이 정하는 金額을 基金管理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新 設〉	⑤農水產部長官은 國外에서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家畜을 輸入하는 者에 對하여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範圍안에서 農水產部長官이 定하는 金額을 基金管理者에게 納入하게 할 수 있다.
⑤基金管理者는 基金運用上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水產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基金의 負擔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⑥(現行과 같음)
第 45 條(基金管理者 및 監督) ①基金은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產協同組合中央會가 運用·管理한다.	第 45 條(基金管理者 및 監督) (현행과 같음)
②基金管理者는 基金을 運用·管理함에 있어서 農水產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財源別로 區分하여 計理하여야 하며, 會計年度別로 基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 農水產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6 條(基金의 運用 및 管理) ①基金	第 46 條(基金의 運用 및 管理) (現行

現 行	改 正
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爲하여 使用한다.(改正 '81.3.7 法 3382)	과 같음)
1. 家畜의 改良·增殖 및 畜産物生産基盤의 造成	1～4. (現行과 같음)
2. 家畜·畜産物 및 飼料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	
3. 畜産物 및 飼料의 生産과 流通施設	
4. 飼料資源의 開發	
〈新 設〉	5. 家畜防疫 및 診療
5. 基金事業에 대한 事業費 및 經費의 支援	6. (現行과 같음)
6. 기타 畜産振興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事業	②～④(現行과 같음)
②第1項 各號의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基金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③基金에서 支給할 補助金은 第43條第3號·第5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納入金과 收益金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補助金의 支給 기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의2 (基金의 出捐) 基金管理者	**第46條의2** (基金의 出捐) (現行과 같

現 行	改 正
는 基金運用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을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에 出捐할 수 있다.	음)
第 8 章 畜産振興會	第 8 章 畜産振興會 (現行과 같음)
第 47 條 내지 第 69 條 削除	
第 9 章 補 則	
第 70 條 (手數料) 第 13 條第 1 項 및 第 2 項·第 16 條第 1 項 및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70 條 (手數料) 第 13 條第 1 項 및 第 2 項·第 13 條의 2 第 1 項·16 條第 1 項 및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產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新 設〉	第 70 條의 2 (聽聞) 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利害關係人에게 時間과 場所를 指定하여 意見을 提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1. 第 14 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業·孵化業 또는 畜產業의 減縮命令, 超過飼育 賦課金의 納付命令, 營業停止 및 登錄·許可의 取消 2.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現 行	改 正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
	3.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
第71條(證票) 第15條·第23條·第34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71條(證票) (現行과 같음)
第72條(權限의 委任·委託) 農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72條(權限의 委任·委託) (現行과 같음)
第10章 罰 則	第10章 罰 則
第7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73條(罰則) 第13條의 2第1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畜産業을 營爲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이 制限 또는 禁止된 家畜을 屠殺한 者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現 行	改 正
第 74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50 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 74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2 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 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 第 13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孵化業을 한 者	1 . 第 13 條第 1 項 또는 第 13 條의 2 第 1 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種畜業 또는 畜産業을 營爲한 者
2 . 第 27 條第 2 項 또는 第 29 條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 第 13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孵化業을 營爲한 者
〈新 設〉	3 . 第 14 條第 7 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命令에 違反한 者
〈新 設〉	4 . 第 15 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拒否·放害 또는 忌避한 種畜業者·孵化業者 또는 畜産業者
〈新 設〉	5 . 第 24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屠殺이 制限 또는 禁止된 家畜을 屠殺한 者
〈新 設〉	6 . 第 25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家畜市場을 開設한 者
第 75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20 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 75 條 (罰則) 第 18 條·第 20 條·第 22 條 또는 第 27 條 2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 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

現 行	改 正
1. 第13條第1項, 第18條, 第20條, 第22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4條, 第15條, 第17條, 第19條, 第23條, 第34條第1項·第2項 및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76條(過怠料)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金의 納付를 怠慢히 한 者는 1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7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73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新 設〉	第77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다만, 第74條第4號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한다.

現 行	改 正
	2. 第17條·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23條·第34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29條第1項 또는 第30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5. 第44條第1項·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한 附加金 또는 納入金의 納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怠慢히 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以下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以內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

現 行	改 正
	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그 事實을 管轄法院에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後 6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現行과 같음)
第2條(종전의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2條(종전의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과 같음)
第3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農水產部長官이 飼料管理法 第6條 및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原料 輸入價格 差額으로 造成하게 한 飼料價格安定基金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第 4 條(基金의 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畜産振興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振興會의 設立과 동시에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業務를 振興會에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引繼이전에 融資된 基金의 融資管理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계속한다.	第 4 條(基金의 管理에 관한 經過措置) (現行과 같음)
第 5 條(振興會의 設立準備) ①農水産部長官은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振興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農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連名으로 振興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振興會의 會長이 任命된 때에는 遲滯없이 會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 5 條(振興會의 設立準備)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附 則 〈 81. 3. 7 法 3382 〉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81. 3. 7 法 3382 〉 (現行과 같음)
附 則 〈 82.12.31 法 3603 〉 이 法은 1983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 82.12.31 法 3603 〉 (現行과 같음)
〈新 設〉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 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43 條·第 44 條 및 第 77 條第 1 項 第 5 號의 改正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種畜業 및 畜産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種鷄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닭의 種畜業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種畜業 또는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는 登錄을 하거나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種畜業 또는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로서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못하거나 許可를 받지 못한 者는 農水産部長官

現 行	改 正
	또는 道知事가 定하는 期間以內에 飼育하고 있는 種畜 또는 家畜의 數가 第2條第4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未滿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超過飼育賦課金을 賦課하되 超過飼育賦課金의 賦課·徵收 등에 관하여는 第1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討 議 內 容

司會(宋燦源, 農水産部 前畜産局長) : 내용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먼저 김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副業을 벗어난 규모를 정부가 관리를 해 生産調節을 해야 되겠는데 그 허가와 등록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토론내용은 家畜別로 등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과 登錄과 許可대상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고, 시설기준은 과연 規制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허가기준이 설정되었을 때 그 이상 규모를 사육하는 업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초과사육 부과금은 현 시세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가지의 큰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登錄과 許可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 축정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金基泳(경기도 축정과장) : 生産調節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나 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법으로 규정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 안다.

그런데 문제는 家畜통계 조사는 연간 1～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축통계가 정확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畜主는 자신이 몇 마리의 소를 기르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行政力

으로 이러한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등록과 허가의 施設基準에서 허가일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등록까지 꼭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頭數 정도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설기준에 맞게 畜産業을 경영하는 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이 규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등록의 경우는 시설기준이 제외되어야 되며 허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얼마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上限線과 下限線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행정일선에서는 왕왕 건축담당 부서와 문제가 되는 일로서 시설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했을 때는 임의로 그 시설기준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飼育頭數를 정확하게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上限線도 두어 건축담당 부서와의 마찰을 피해야겠다.

그 다음에 종축업 등록의 優良種豚場에서 혈통등록된 種母豚의 문제인데 이 보유종모돈의 10 % 이상을 公認能力檢定에 합격한 것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1 마리만 가져도 종모돈 보유두수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賦課金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초과두수의 확인 및 업자에 대한 평등한 법 적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안다.

司 會: 다음은 오교수님께서 規模의 設定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吳鳳國(서울大敎授, 家禽學會長) : 정과장께서 말씀한 부분을 제하고 우선 登錄規模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所得면에서 農家와 都市의 수준이 비교되어 있는데 여기서 農家所得의 최고액수가 일반농가의 최고수준인지, 아니면 畜産農家의 소득을 감안한 수준인지 알고 싶다. 일반농가와 특수업종인 축산업은 所得算出時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調整案을 검토해 보면 다른 分野는 모르겠지만 採卵鷄분야에 있어서 '81~'83년도까지 평균한 年間 首當소득이 1,293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자료에 의한 소득은 972원 정도 되고 肉鷄는 首當 229원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미루어 보아 産卵鷄 등록규모로서 2만首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生産調節, 즉 需給調節의 측면에서 등록이나 허가의 上下限線의 문제가 있다. 養鷄에 있어서는 현재 종계등록과 부화장 허가를 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과 허가를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生産 및 需給調節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肉鷄만 하더라도 畜協中央會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需要豫測을 하고 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採卵鷄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안정상태를 유지하지만 生産不均衡에 의한 가격의 폭락과 앙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도 등록된 種鷄業者와 허가된 孵化業者에 대해서 생산조절을 하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과연 현재의 行政力을 미루어 보아 잘 실시된다는 것은 의문이다. 실지로 병아리 숫자도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養鷄協會를 통해서 부화업자들이 부화생산 추세에 대한 통계를 잡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정확하다고 해도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해 제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양계산업이 침체상태에 빠져 업자들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養鷄振興法과 같은 調整案을 만들려는 중이며 일부 중소규모의 업자들은 국회에 제안을 해서 소위 쿼타制 비슷한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반면에 企業養鷄業者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政府는 首數增加를 유발시킬 수 있는 長期低利의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건축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首數減縮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원인은 中小業者들은 협조적이었으나 企業측에서 호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며 심지어는 전염병 豫防을 이유로 감시원의 首數확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도대체 양계장에서 몇 마리를 기르는지 조차도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측에서 首數減縮을 위한 규정을 法制化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企業측에서는 產業발전을 저해하는 惡法이라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施行令에도 農民과 企業의 관계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시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產業發展的인 측면에서 큰 장애가 될 것이다.

司 會: 養鷄分野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法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다고 하여 이것이 지켜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다.

정부에서나 일선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양계분야는 정부에서도 孵化場에 대한 감독 및 生產調節을 철저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柳允洙(韓國酪農肥育協會長): 이 법이 제안되기 전에 이러한 회의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늦게나마 農村經濟硏究院에서 이러한 좋은 자리를 갖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畜協中央會가 제시한 農家所得은 현재의 우리 실정을 보아 소 한마리당 15～20만원 결손을 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숫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소득이 있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때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문제 중에서 需給安定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은 資源은 없고 國土는 좁은데 人口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投機心理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融資나 補助는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施策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상가상인 셈이다. 따라서 需給安定을 논하기 이전에 肉類, 牛, 飼料의 輸入문제와 資金방출 및 畜產홍보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원료를 수입해 만드는 공산품을 농민들에게 공급할 때 수입가격의 2배 이상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農業生産物價格이 3배나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강조해 輸入自由化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법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5～10년 정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司 會 :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

所得에 관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유회장님 말씀대로 안 맞는 점이 많을 것이다. 産卵鷄 首當 과연 1,239원이나 소득이 되느냐 하는 데 異議를 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규정상 농가수준은 규제를 하지 말고 적어도 專業이상을 대상으로 해 보자는 의도에서 이러한 숫자를 활용한데 불과하다는 것과 실무자들이 가급적 行政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基準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다음은 직접 양돈을 하시는 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榮煥(마니育種社長) : 저는 採卵養鷄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양계축산농가를 계속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또 하나는 輸入自由化를 대비해서 生産性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계산업은 다른 가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飼育首數에 있어서 닭을 100마리 또는 1,000마리 수준으로 기를 수는 없다. 이것은 수익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生産性이 낮은 소규모 양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계는 번식력이 매우 빠른 특징 때문에 生産이 매우 불규칙하다. 따라서 生産調節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飼育頭數의 확인시기를 3월, 9

월 年 2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年 2회의 확인을 한다는 것은 빠른 번식력을 볼 때 生産調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계의 규모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을 규제한다면 小規模의 양계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규모 양계 증가는 生産者의 數의 증가이며 따라서 生産物價格의 진폭이 크고 많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양계의 생산규모 제한이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아도 産卵鷄와 브로일러를 1인당 5,000首로 제한하니까 協同組合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사육수를 늘리는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여러 사업량을 세분하는 현실이며 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산규모를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사육숫자를 늘리려는 의욕은 법으로 제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따라서 제 생각은 양계등록규모에 있어서 외국의 등록 규모의 절반 수준이 되는 5만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司 會: 다음은 윤상무님께서 養豚의 登錄 및 規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尹熙辰(先進畜産常務): 저는 앞으로 專業養豚規模로 법의 취지가 전환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小規模 농가는 물론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등록의 경우에 절차를 너무 어렵게 한다거나 규제 일변도로 시행되어서는 전업농가 규모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수급이나 가격안정에 불리한 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취지대로 대규모 농장은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며 등록의 문제에 있어서 300두, 500두 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제를 한다기 보다는 사육두수의 파악과 등록 후의 융자의 확대 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5천두와 1만두의 案에 있어서 초과사육 두수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까지의 畜産政策과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肉加工의 경우 50%를 가공할 때 上限線 이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系列化主體로서 적당한 업체가 肉加工이다. 그래서 肉加工業體가 직접 사육하는 것보다는 계열화해서 農家가 생산한 물량을 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카트미트(cut meat)는 제외되어 있는데 열처리하는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만 加工品으로 취급하고 生肉加工은 제외한다는 것은 돼지고기의 등급화나 포장육의 육성에 큰 장애가 되리라 본다. 실지로 햄, 소세지와 같은 加工品을 생산하는 회사는 몇 군데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이런 규정을 둔다면 법의 제정 목적과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규모 양돈장은 전문종돈업으로 육성하는 政策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다. 대규모 농장이 어떤 育種事業을 한다든지 種豚業으로서 기능을 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施設문제에 있어서 豚舍를 개조할 경우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頭數에 의해 규제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현재 시설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조나 신축할 때 보고를 일일이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種畜業의 경우에 草地를 두당 30평씩 잡았는데 예를 들어 1,000 마리를 사육하는 종돈장을 운영할 경우에 초지 3만평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양돈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地價를 평당 5천원으로 해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양돈의 추세가 반드시 草地를 필요로 하느냐 하는 점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한다.

種豚業에 있어서 등록에 의한 종돈생산을 규제함으로써 양돈의 飼育頭數를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돼지는 닭과 달라서 반드시 종돈장에서 종돈을 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 보다는 檢定豚을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초지의 규제보다 防疫 및 衛生基準을 강화해서 種豚을 구입하는 業者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본다.

司 會: 施設을 개조 및 보수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데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문제는 왜 이러한 條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계통을 통해 양돈장 증축을 막아도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한국적인 여건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안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草地와 飼料圃문제는 반드시 초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 또는 사료포문제를 병행해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료를 자급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施設基準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문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文八龍(建國大教授, 農業政策學會長): 저는 원래 축산전문가가 아니고 農業經濟를 전공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畜産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成長産業으로서 농업부문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취지 및 발상에는 찬성이다. 과거의 예를 보아 호그 사이클(Hog cycle) 등에 의해 價格이 불안정했고 또 이런 측면에서 副業農家의 所得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이 民間主導型 또는 自由市場經濟體制로 유도되어야 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며 더우기 축산의 경우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 이러한 통제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産業이 獨寡占化할 때 가격을 규제한다거나 公正去來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 나라의 企業養畜에 있어서 이러한 독과점화 같은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의 기본기조가 헌법이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리고 규제의 내용이 결국 出荷를 조절하자는 것이므로 결국 價格통제를 해야 된다. 따라서 가격통제가 과거 우리 나라에서 실효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와 이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行政府의 현 여건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한다. 나쁘게 말하면 부조리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현재 企業養畜은 어느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副業養畜은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 부업양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價格不安定의 要因이 부업양축가였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기업양축가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出荷調節 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부업농가의 경우는 거의 출하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副業농가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가격불안정 요인을 더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需要供給의 原理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유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떠한 법을 만들 때에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畜産物 消費문제를 연결시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肉加工에 있어서 豚肉의 경우만 보더라도 선진국은 돈육의 85%~90%가 거의 햄 소세지 등 기타 육가공품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겨우 3~3.5%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육가공산업은 꼭 필요한 산업이며 肉加工産業을 육성시키려면 規模의 經濟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부업의 형태로 길러온 것만 가지고는 生産費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과연 합당한 政策인지 모르겠다. 더우기 肉加工業은 備蓄事業의 효과가 있는데 육가공업의 발달과 관련시켜 볼 때 이 法은 전혀 모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저해하는 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가격안정과 농민소득 증대를 원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될 줄 안다. 예를 들어 飼料 또는 금융관계 그리고 수요예측작업 등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李永來(農水産部 畜産課長) : 정부로서는 法改正 전에 어떠한 협의를

했더라면 좀 더 내용이 다듬어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養豚業에 대해서 法으로서 規制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은 양돈의 不安定에 따른 波動을 겪고 나면 망하는 것은 부업농가요, 커가는 것은 기업양돈가라는 양돈인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저희들도 이 규제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여 규모별 양돈가에게 여러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각각 자기 위치에서 나는 벗어나고 나 이상은 규제해 달라는 입장들이었다.

아직까지 몇 두 이상이 적당하다는 말씀은 없었고 큰 규모로 育成하여 生産調節 측면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肉加工場을 보유한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업체는 자체양돈장에서 생산하는 돼지의 100%를 육가공장에서 이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가공장의 자체양돈장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느냐 하는 문제와 또 양돈장과 육가공장이 법인체가 다를 때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輸出用 양돈의 경우에 있어서 작년 후반기부터 수출을 허가했지만 불과 돼지 1마리당 18%의 고급육만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그나마 일본의 양돈시세가 불안정하면 수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출업체라고 하여 1만두를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만약 수출을 못하게 될 경우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용양돈은 얼마 이상 허용해도 좋다는 기준도 설정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司 會: 農協中央會 황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광범위하게 말씀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黃鍾太(農協中央會 法規課長):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農協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우선 부언드린다.

資本主義經濟下에서의 어떤 行政은 규제보다는 지도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축산행정도 규제보다는 축산관측 등을 통한 指導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금후 국내 축산물의 需要供給에 대한 예측과 국제시장에서의 수입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年次的으로 어느 정도의 사육두수가 適正線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규모 이상의 畜産業者를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줄 안다.

시행령에 대한 金박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自體 肉加工場을 가진 大企業에 대해서는 규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小企業과 專業畜産農家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고 大企業은 규제를 피하게 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규정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규제대상의 規模에 대해서는 金박사님이 검토 조정한 대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法의 경직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은 法의 기준을 企業畜産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도 규제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추후에 다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규제대상을 확대하던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司 會 : 다음은 강원도 축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李英勳(江原道 畜政課長) : 경기도 축정과장님께서 일선에서 느낀 점을 대략 말씀드린 것과 저희 강원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畜産物의 안정공급, 農家所得의 증대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畜産法에 의해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사업보다 축산업이 주종 산업이며 성장산업이다. 따라서 專業化, 企業化가 다른 道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牧畜業行政指導要綱"을 만들게 되었다. 이 要綱에는 草地 30*ha* 이상을 가진 事業, 소를 50두 이상 가진 飼育業, 300두 이상의 養豚業, 1萬首 이상의 養鷄業으로 규모를 나누었는데 이번 시행령의 내용과 유사

하다. 이러한 내용은 규모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公害 문제를 십분 고려하여 行政指導要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막상 등록을 해 보았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등록 과정에서 돼지의 경우 防疫을 이유로 畜舍에 들어가지도 못해 頭數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육규모를 높혀 주면 그만큼 대상농가가 축소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본다. 그리고 행정책임은 현재로는 市·道가 지고 있지만 점차 郡단위까지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선진국에는 각종 協會가 발전되어서 협회를 통해서 두수를 조절하고 가격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당분간 행정부서에서 두수를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범위에서 규제하되 장차는 組合과 協會의 지도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司 會:이 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許可는 농수산부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허가를 일선에 위임했을 때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법령의 책임이 下向調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양돈은 경기도와 충청도에 가장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기준을 낮게 정했을 때 어떤 郡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어떤 郡은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郡이 있으리라 본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대상 호수에 있어서 돼지는 등록대상이 1안의 경우 300두로서 762호나 되고 2안의 경우 500두로서 347호, 허가대상은 1안의 경우 3,000두로서 31호, 2안의 경우 5,000두 이상으로서 20호 이상과 같이 닭, 돼지, 소 등을 합해 등록허가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호수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효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음은 양돈협회 부회장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養豚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趙鎭衡(大韓養豚協會 副會長): 어느 면에서 보면 양돈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도 든다. 저희 양돈인들 중에서도

企業養豚人들 때문에 이러한 規制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동안에 우리 나라의 食生活이 개선됨과 동시에 豚肉消費가 상당히 증가되었고, 이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企業養豚人들이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能力檢定所까지 생겨서 種豚도 상당히 개량되고 있고 肉質도 많이 개선되어 국민들이 豚肉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된것같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육규모의 설정인 것 같다. 등록기준은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정해야 되며 무엇보다 통계의 파악을 政策의 기본으로 본다면 마땅히 많은 등록숫자를 얻기 위해 등록기준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00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사방법에 있어서 전문기구 및 협회를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등록절차는 가급적 간편하게 해야 하며 施設規制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협회에서 맡는다면 100두 정도로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協會會員들이 대강 100두 정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가규모는 3,000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상한선은 1만두 정도로 하면 좋겠다. 1만두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통제하거나 가격파동 때 조절하는 기능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肉加工業體와 輸出業體라고 해서 1만두 이상 사육해도 상관없다는 규정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육가공업체와 수출업체는 계열화생산으로 유도해서 부업농가와의 계약에 의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시설통제면에서는 시설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위생법적인 면에서 시설의 중요성을 다루어야 될줄 안다.

끝으로, 경과조치에 있어서 기존축산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이미 축산을 하고 있는 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두수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養豚施設은 건축을 한 후 10년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경과기간을 두어야만 무리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축산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가령 2만두 사육하는

업자에게 1만두로 줄여라 했을 때 나머지 1만두에 대한 시설투자는 막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것이고 시설무효에 대한 민사소송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느 법이든지 경과조치가 있듯이 경과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司 會: 양돈협회 부회장께서 100두 이상을 등록대상으로 해서 수급과 가격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協會에서 두수파악 및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기존축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문제를 말씀하셨다.

전체농가 중 100두 이상의 농가를 말씀드리면 40% 정도이고 100두 이하 농가가 60% 정도이다. 따라서 수급조절의 가장 어려운 것은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100두 이상의 농가만 하더라도 40%나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協會가 과연 관리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년째 養豚經營安定協議會를 만들어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양돈협회 전체의 몇%가 보고를 해 주고 있는지, 또 전체적인 양돈의 현황을 협회에서도 파악하기 어렵고 양돈가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1만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 사후 경과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회원들의 뚜렷한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존업자에게 경과조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趙鎭衡: 있었다. 회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10년 정도는 시설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司 會: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기존 1만두 이상 기르는 6~7개 업체는 기득권을 가질 수 있고 신규업자는 그 이상 못하게 하면 누가 가장 불만인가 하면 1만두에 약간 못 미치는 업자들이다.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양돈인 전체가 양해를 해

줄지 의문이다.

趙鎭衡: 충분히 토의를 해 보았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양돈인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

司 會: 다음은 윤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尹熙燮(建國大教授, 酪農學會 副會長): 먼저 登錄문제에 있어서 우리 농업의 生産經營단계를 봤을 때 副業과 專業, 그리고 企業의 規程을 먼저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農業所得의 범위를 專業까지 본다면 앞으로의 畜産行政은 專業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法의 취지는 외적으로는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도시 대자본이 농업자본을 침식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은 농업소득의 범위내에서 가축의 마리수를 규제해야 될 것이며 농업소득 이외의 經濟行爲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에 따른 賦課金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우리 경제체제하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분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줄 안다. 다만 행정적 편의만 위해서 규정을 취급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畜産은 食糧自給이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했으며 국가의 低物價政策에 의해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는가. 이런 점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축산이 국가시책, 경제시책 또는 농업식량시책에 공헌을 했으면 공헌한 만큼 보상은 이제 받을 시기가 왔다고 본다. 農業生産의 보완적인 축산으로서의 시기는 지났고 이제 축산도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축산법개정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열의를 가지고 토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司 會 : 所得이 높아지면서 需要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그나마 우리 양축가들이 적절한 供給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을 안 할 것이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 축정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韓根哲(忠南洪成郡 畜政係長) : 저는 이 法이 市·郡에서 시행될 때 애로점과 느낀 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양돈협회 부회장님께서 100두에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관리 면에서는 동감이지만 행정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案에 대해 찬성한다.

1案의 내용은 畜舍방문 조사시 농가가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防疫관계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만 해결될 문제인것 같다.

그리고 優良種豚관계에서 일반종돈장은 20두의 혈통등록된 종빈돈을 보유하고 우량종돈장도 20두의 종빈돈 중에 公認能力檢定을 받은 돼지를 50%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는 너무 두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50두 이상은 등록하도록 했으면 한다.

産卵鷄의 경우 현재 種鷄業登錄 및 孵化許可의 제도가 있지만 종계업 등록관계는 실제 운영을 못했다. 그 원인은 종계장 등록확인서를 가진 종계업자가 협회에 가서 종계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종계업 등록확인이 안된 일반 양계장에 가서 초생추를 구입해 종계확인서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이 類似양계 부화장과 음성적으로 계약되어 부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숫자는 맞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법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사 : 일선에서는 역시 規模를 높여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다. 다음은 業界에서 오신 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儀守(해인農場 會長) : 養畜家의 입장에서 개정법안을 보면 규격이니 벌금이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시행규칙에 있어서 얼마나 보완이 되고 모순된 점이 시정되겠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양축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需要의 변동을 생각하지 않고 法에 의해 등록을 몇 두까지 하고 또 몇 두까지 허가를 내야 한다는 것은 해마다 조정해야 될 번거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규정을 집행하려면 우선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회정화 차원에서 실제로 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飼育頭數의 부족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랄 때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생산이 과잉될 때는 단속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 진다면 양축가의 불편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肉加工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있어서 안되겠다.

이 法의 쟁점은 입법을 하기 전부터 상당한 시간과 논란이 있었고 또 통과되고 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생각과 입장이 다른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라도 企業양돈가들, 전업양돈가들, 그리고 소규모양돈가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규합하여 모순이 없는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등록 및 허가범위에 있어서 가능한 100두까지 줄여서라도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需給調節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다. 臺灣에서는 1년의 需給量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 발표에 따라 양돈가들은 그 해의 규모를 정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이제 우리도 축산의 기반부터 근본적으로 해

결해야 될 것이다.

司 會: 김사장님은 肉加工場이니 輸出業體에 대한 일정 이상의 사육두수를 허용해 주는 것도 특혜조치가 되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은 박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朴英一(서울大教授): 許可規模에 있어서 上限線의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三元交雜種 子豚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삼원교잡종 자돈만이 가장 좋은 種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닭의 경우를 보면 三元交雜種 보다는 四元交雜種을 이용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도 四元交雜種을 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趨勢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四元交雜種이 三元交雜種 보다 經濟的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연구자료도 나와 있다. 이것은 삼원교잡종으로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고 三元 또는 四元交雜種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種豚改良事業의 경우 上限登錄이나 許可規程을 완화하고 점차 상한선도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수한 品種을 얻기 위해 많은 수의 種豚이나 種鷄를 飼育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종돈이나 종계의 改良事業을 위해 상당히 큰 규모의 種豚場, 種鷄場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規程의 완화 및 상한선이 배제된다면 정확한 能力檢定을 遂行한다던지 혹은 公認能力檢定에 출품하는 등의 細部規程, 즉 어떠한 경우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家畜改良의 세계적인 추세는 民間主導型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國際競爭的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外貨 및 貿易收支를 볼 때 種畜 및 種鷄改良事業에 대한 畜産業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수한 종축 및 종계의 확보는 畜産의 生産性과 競爭力을 증진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種畜業의 登錄基準에 있어서 돼지의 경우를 보면 公認能力 檢定所에서

합격된 돼지는 競賣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친 것을 公認檢定能力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세부규정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준에 있어서는 能力檢定에 합격한 種豚의 소유에 따른 우수한 種豚場 또는 일반 종돈장으로 구분되지만 종돈장의 衛生水準까지 포함해서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種豚構造의 階層化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上部에 갈수록 遺傳的 資質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으며 만약 질병이 발생한 種豚場은 우수한 종돈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血統登錄, 能力檢定에 衛生水準까지 포함해서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종돈장에서 優良종돈장이 되고 싶어 하게 하는 어떠한 誘因(incentive)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畜産法 개정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登錄이나 許可를 받기 위한 規程을 가능하면 극소화했으면 한다. 물론 이 法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自由競爭體制의 原則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운영의 미숙으로 畜産物生産費의 상승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이 法이 좋지 못한 評價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경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自由競爭體制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세부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司 會: 朴박사님께서 種豚場의 上限線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이었다. 그러나 무질서한 種豚生産을 어떻게 體系化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에는 種豚飼育能力이 없는 농가에게도 種豚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種豚의 수준에 있어서는 三元交雜種, 四元交雜種 등 최하의 種子까지도 種豚으로 생산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日本과 대만의 양돈체계 현지조사 후 우리 나라 양돈체계와의 비교분석 결과, 체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種畜業에 대해서 上限線을 두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대규모 종돈 사육농

가의 種豚基準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그래서 적어도 血統登錄된 種豚 20두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種豚으로 인정을 해주고 3개 品種 이상을 가질 경우에는 種豚場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점차 産業化에 따라 SPF種豚 등도 생산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 또한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다. 앞으로 畜産局에서는 育種전문가 및 교수님들의 諮問을 얻어 種豚, 種鷄場의 규제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것이며 지금은 登錄만 시킨 후 현황파악만 하고 種豚配賦體系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이 發想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李永來 : 가능하면 大企業은 肉加工原料生産이나 輸出 또는 種豚改良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種豚改良事業을 위해서 사육하는 돼지는 규제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어떻게 규정하여 인정할 것인가 등의 구체화시킬 묘안이 없다. 또한 저희 관계자들의 種豚改良 및 分讓에 관한 日本과 대만의 현지조사도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 나라의 種豚改良이 스웨덴의 피라밋型처럼 種豚生産者, F_1 生産者, 三元雜種飼育者 등과 같이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 種豚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一般種豚場과 優良種豚場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사용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 몇몇 분이 모여 협의를 한 적도 있지만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다. 그래서 박교수님께서 좋은 方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朴英一 :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資料를 조사하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司 會 : 다음은 種畜改良協會 황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黃永球(韓國種畜改良協會長) : 먼저 結論을 말씀드리고 그 理由를 설명하겠다. 韓牛와 乳牛는 登錄과 許可를 현재대로 두는 것이 좋겠고, 돼지는 養豚業者와 政府측 및 學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 하는 方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養鷄는 현재 규제를 해왔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것을 제거해버리면 되겠다.

우리 나라 農村社會構造가 장래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家畜의 生産性이 畜種別로 어떻게 다른가 또 생산능력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분석하고 또 技術水準은 어느 정도인가, 기술수준의 差異는 어느 정도인가 등등을 분석한 후에 施行規則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畜種別로 말씀드리면 韓牛는 우리나라 농촌의 전형적인 社會構造下에서 한두 마리씩 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구조상으로 보아 韓牛는 규제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乳牛는 젖이라는 것 때문에 쿼터制가 가능하여 畜産物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은 原乳의 쿼타제를 도입하면 가능할 것이며 장래의 生産過剩時도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 돼지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特性, 즉 고기生産量이 많기 때문에 生産過剩에 따른 波動이 오게 되며, 따라서 生産調節을 위해 規制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自體調節機能만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行政規制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돼지의 繁殖문제가 있기에 자체조절기능에만 맡겨가지고는 어렵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生産過剩이 될 때는 加工業者가 收買해서 보관하고, 부족할 때는 放出해서 조절한다. 미국은 加工業의 比率이 60 ~ 70 %되고, 일본도 45 ~ 50 %가 되기 때문에 調節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과잉될 때 政府만 收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수매하지 말고 一般加工業者가 收買하여야 한다. 그리고 業者들이 冷凍施設을 많이 소유하게 하고, 生産過剩이 될 때는 加工業의 比率을 늘려 加工肉으로 수매를 하여 쉽게 저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파동을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養鷄는 벌써 企業이나 專業化되었고 돼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防疫문제로 농촌 전체에 飼育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技術에 있어서도

부업보다는 專業 및 企業이 유리하기 때문에 收益性에 있어서 부업이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그리고 行政的 管理면에서 공무원의 고발에 의한 부과금징수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畜産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量的 증대보다는 質的 改善을 통한 축산물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賦存資源이나 技術水準을 보아서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래 畜産政策方向을 量的 공급에서 質的 改善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家畜을 개량해서 生産能力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畜産振興大會와 같은 중요한 행사는 施行令에 넣어 法制化해야 한다. 그래서 행사의 형태 및 시기를 고정시켜 農民의 참여와 의욕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改良에는 登錄, 審査, 檢定이 있는데 登錄이 제일 중요하다. 家畜을 개량하겠다는 것이 法의 의지에도 있는 것이니까 개량할 수 있는 등록, 심사, 검증에 대한 것을 규정하면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方法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司 會 : 일선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家畜傳染病豫防法에 의해서 疾病, 傳染病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豚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罰則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罰則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豚콜레라는 여기저기 발생한 사실이 좋은 본보기가 되듯이 이 法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적으로 法을 운영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畜産法에 있던 種鷄의 登錄 및 孵化의 許可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정확한 孵化통계 分析에 의해 孵化場에 대한 감독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권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權五杰(삼보牧場社長) : 乳牛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所得算定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의 試案은 1981～83년까지 평균을 낸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낙농가의 입장이다. 그리고 登錄頭數가 30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酪農家를 보면 搾乳만 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搾乳牛를 30두 사육한다고 할 때 송아지와 育成牛는 거의 滿期이 될 때까지 계속 사육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量을 候補畜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판매하는 이와 같은 酪農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숫송아지를 낳는 경우에는 13개월을 전후해서 500 *kg*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肥育牛로써 出荷를 하고 있다. 따라서 成牛 30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育成牛가 80% 정도인 24두, 肥育牛는 50% 정도인 15두를 포함해 총 69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登錄頭數는 50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施設基準은 점차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젖소를 기른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建物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草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조합원수가 6,200명인데 그중 飼料圃도 없는 조합원이 약 70% 이상이 된다. 그리고 약간의 사료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冬節期 200일동안 사일레지를 급여하는 경우 1마리당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평당 20 *kg*을 생산한다면 약 4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年中 사일레지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400～500평을 가지고 1마리를 기르고 있다. 대부분 이와 같이 젖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실제로 草地면적보다 상당히 飼育頭數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登錄을 하는 경우 草地가 적으니까 頭數를 줄여야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되는 축종인 돼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畜種에 대해서도 施行令의 規定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경우는 좀더 飼育頭數를 늘려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施行令에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司 會: 우리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無資格 酪農家가 있다. 서울 근교에도 飼料圃 한평 없이 운동장만 200～300평 가지고 수십 마리를 기르는 農家로부터 草地나 飼料資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農家가 있다. 그래서 牛乳 *kg*당 생산비가 250원에서 400원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牛乳代金 313원 이상의 生産費가 드는 농가는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牛乳를 생산하는 우리 나라 酪農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육성하는 酪農家는 飼育基盤이 없을 때는 育成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내용이 구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 내용에 따라 施行이 되었을 경우 登錄되지 않은 酪農家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년 이내에 草地를 확보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수천 정보의 草地를 확보해 나누어 줄 능력도 없고 해서 이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김윤환선생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允煥(慶南種畜場長):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農業國으로서 農家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農家의 所得을 무시한 法이 시행되면 절대로 안 되리라고 보고 있다. 작년도의 農業所得 중 쌀이 차지하는 比率이 44.2%이고 畜産이 차지하는 比率이 25.4%였으며 쌀에 대한 畜産의 比率은 57.5% 정도였다. 현재 정부의 施策이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農村所得은 아직도 도시의 2분의 1정도의 수준이며 米麥收入으로 農家所得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왔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의 25.4%의 畜産所得이 쌀의 소득보다 더 높아져야만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大企業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規制가 되어야 되겠고 上限線은 需給調節 면에 대해서 그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

면 될 것이며 단지 規模가 크면 需給을 조절하는데 용이할 뿐이지 適正規模는 별로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大規模 投資에 의한 獨占的 利潤의 發生은 규제해도 農家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副業 및 專業은 적극 장려해서 農村所得을 올리는데 畜産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韓牛의 경우는 황회장님과 동감이며 行政的 規制 및 간섭에 의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施設基準에 있어서 현재의 실정으로는 전체 施設의 70～80%는 규정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收支도 맞지 않는 畜産을 하면서 규정에 따라 施設을 보강해야 되면 농가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이 法을 시행함으로써 養畜家의 보호와 장려를 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規制는 좀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登錄할 수 있는 規模는 높여 놓고 副業이나 專業의 養畜家는 자유롭게 經營을 할 수 있게 개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許可와 登錄의 適正線은 5～6인 가족의 생계비 및 교육지출이 해결되는 수준에서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國民所得면을 고려하여 적어도 5년 후의 經營規模를 내다보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飼育規模의 통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共同名義 등을 이용해 사육규모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合法的으로 교묘하게 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上限線의 설정만을 法的으로 규정했으면 한다. 肉加工에 있어서는 上限線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加工業體나 輸出業體는 自體 生産物은 50% 이내로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李永來: 許可上限線과 관련하여 肉加工場의 原料肉 調達用 飼育頭數가 50%라고 하는 것은 自體飼育頭數의 50% 이내에 한해서 上限線 規制를 해제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50%이상은 다른 곳에서 즉 養豚家 등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한다.

司 會: 이과장님의 말씀은 김장장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이다. 다음은 황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黃仁玉(大韓養鷄協會 專務) : 우리 나라의 養鷄 수준은 세계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다. 현재 種鷄登錄 대상이 전국에 250개소 정도 된다. 그러나 250개소 정도에서도 行政力이 미치지 못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이 試案대로라면 대상農家가 2,300농가가 된다. 여기에 따른 약 10배 정도의 업무량을 현재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登錄을 하기 위한 品種 施設規模와 같은 基礎調査는 生産者團體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思料된다.

需給 및 價格安定의 측면에서는 작년의 브로일러의 生産費가 최하 500원대에서 최고 1,500원대까지 300%의 기복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養鷄飼料는 대부분 輸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種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系列化 生産體制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試案에도 系列化生産 권장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登錄規模에 있어서는 먼저 정부의 政策이 農家養鷄를 위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企業養鷄를 인정하고 정책을 펼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양계에 의해 농가양계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 일본의 養鷄業者 및 대표들의 기업양계에 대한 규탄대회 등을 미루어 보아 이러한 사실은 남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만약 농가양계 위주로 발전을 시킨다면 登錄規定을 試案대로 2만수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러나 專業化 趨勢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5～10년 앞을 내다보아 그 需要量을 추정하여 上向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養鷄의 施設基準은 현재의 시설 및 技術能力을 감안해 採卵鷄의 경우는 4평에서 3평 부로일러의 경우는 3평에서 2평으로 下向調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司 會 : 과거 農特事業에 의해 養豚, 養鷄分野도 農家支援對象이었는데 養豚週期에 의해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후 政府施策事業으로는 양돈, 양계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비닐養鷄場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農民들의 비난도 많았고, 금년 상반기에는 높은 양계값이 형성되어 物價와 需給調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專業的인 양계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비닐양계의 簡便性 및 收支打算때문에 농민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음은 황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黃一奎(全北畜政課 酪農係長) : 韓牛와 乳牛의 上限線規制는 농민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또한 쇠고기와 牛乳의 國內自給率을 보아 上限線規制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돼지 문제는 穀類輸入과 관련하여 과거에 穀類를 輸入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돼지를 輸出했다. 곡류를 수입한 이후 돼지와 닭의 飼育이 용이 해졌기 때문에 景氣에 편승하여 生産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2차, 3차産業資本의 유입에 의한 養豚農家의 위축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 上限線을 정했으면 좋겠다. 肉加工場의 規制는 輸出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施設規制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過怠料 徵收 문제는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일선 공무원에 의한 고발과 과태료 징수는 協會를 통한 自律的 徵收와 같은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調査時期 및 違法의 程度 등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養鷄는 농민들의 의욕이 대단하기 때문에 上限線에 별로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飼料를 輸入하기 때문에 需給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規制의 수준을 정했으면 한다.

司 會 :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生産調節의 행위는 3단계로 나눌수 있다. 먼저 調査에 의해 頭數減縮의 命令을 내려 일정 기간내에 시정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賦課金을 내도록 하며 부과금 징수에도 응하지

않을 때는 고발에 의해 罰則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頭數에 위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고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란다.

李永來: 부언하여서 초과飼育 부과금은 國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두수감축 명령, 부과금, 登錄許可 취소, 營業취소 등은 條文 70조 2항에 보면 聽聞會를 개최하여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無許可 및 無登錄 畜産業者는 바로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司 會: 다음은 兪理事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俞相烈(畜協中央會 企劃担當理事): 이번 畜産法 制定목적이 大規模 養畜家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飼育規模와 畜産物 需給을 조절하여 價格安定을 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돼지와 닭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리라 본다. 돼지의 飼育頭數 上限線은 현재 농촌의 常傭勞動者를 2.5人으로 간주했을 때 2.5人에 따른 최대 飼育規模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企業畜産의 경우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있는 小企業 고용자수인 5인 기준에 따른 사육규모도 추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바람직한 所得水準과 관련하여 5인 기준에 의한 사육두수는 약 1,000두는 될 것이다. 참고로 臺灣의 경우 1973년도 養畜家規制法을 정한 후 3～4차례 수정을 한 현재는 1,000두의 수준에서 고정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하한두수를 1,000두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는 農家와 新規 登錄하려는 農家와의 調和가 문제가 될 것이다. 下限頭數를 1,000두로 볼 때 上限頭數는 3,000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3,000두 이상의 두수감축은 일정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신규등록으로서 1,000두 이상을 許可할 경우에는 당년도의 總需給物量을 감안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닭의 경우는 20,000首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고 소는 登錄의 목적이 統計把握과 효과적인 統制手段으로 본다면 실질적으

로 소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리라 보고, 다만 衛生이나 施設의 現代化를 위한 등록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등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소는 需要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生産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등록은 당분간 몇년 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司 會 : 다음은 허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許信行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畜産政策의 궁극적인 목적은 生産性 향상과 農家所得 증대에 의한 均等分配에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畜産을 논의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資本主義 사회의 自由市場體制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規制를 한다는 것은 生産性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自由市場에 맡기기를 바란다. 이웃의 中共이 점차 資本主義化하는 것도 좋은 예로써 경쟁활동은 自由競爭體制가 가장 좋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돼지에 있어서 생기는 3년 주기의 波動일 것이다. 이와 같은 주기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현실만 보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흥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行政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安定시킬 것인지 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된 것 같다. 둘째는 농업과 관련이 없는 大企業들이 新種 尖端産業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農民들의 所得을 잠식하여 所得配分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이 養豚産業의 주기를 용납하기 힘들고, 所得의 均等配分에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規制의 必要性이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規制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畜産政策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생각으로는 養豚, 養鷄 분야에서는 점차 專業化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副業은 가만 두어도 점차 적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養畜家들도 장래 所得이 증가되면 專業化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가축은 현재 輸入하고 있고 또 만성적으로 不足하기 때문에 山地利用 및 賦存資源의 활용, 그리고 農家所得 증대 등을 살펴 볼 때 반드시

技術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가축은 生産性을 향상시킬 수 있는 政策的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適正規模의 효율적인 設定과 生産性 阻害要因의 極小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전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規制의 대상과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草食 家畜은 당분간 登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으며 만일 꼭 시행이 된다고 하면 規模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젖소의 경우는 2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돼지는 專業農育成을 전제로 하여 최소한 500두에서 1,000두 정도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畜産政策과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닭은 試案의 규모보다 높게 잡아 가능하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上限線 許可規模는 최고 生産性의 適正規模와 장래의 所得에 대한 養畜家의 희망을 십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施設規制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施設은 投入과 産出의 관계이며 經營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生産性의 低下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經營改善을 위한다면 價格調節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許可 책임자는 될 수 있으면 일선 관료 쪽으로 下向調節되어야 하겠다. 農民과 肉加工業體와의 관계에 있어서 加工業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畜産政策 목적에 위배되며 加工分野와 農民들과의 契約과 같은 방법을 통해 農家所得 증대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輸出用으로써 飼育을 허가해 주는 것 또한 自體飼育에 의한 輸出供給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른 부조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대규모 飼育農家만으로도 供給이 가능 하리라 본다. 登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罰則에 의해 강요하는 것보다 誘因에 의한 자발적인 등록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誘因은 收買의 優先權, 技術 및 飼料의 優先提供 그리고 生産資金의 優先支援 등을 들 수 있다.

司 會 :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혹시 빠진 내용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몇 분만 더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吳鳳國 : 過剩生産에 의해 波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그럴 때마다 生産者나 消費者는 모두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週期의 波動이 적도록 하는 소위 先進國型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나 政府는 低物價 政策이나 技術革新 측면에서 보면 養鷄産業에 대해서 지금까지 保護 育成해준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賦課金制度와 畜産物安定基金을 통해 需給을 조절하게 되면 어느정도 波動폭이 적어지리라 생각된다. 條文 42조에 畜産振興基金에 관해 아주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生産者 스스로가 基金을 마련하여 價格安定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계란은 GP센터, 브로일러는 屠鷄場을 통해서 商品이 출하되기 때문에 GP센터나 屠鷄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에서 얼마를 出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制度가 성립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養鷄業者는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生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해 이러한 制度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각 畜種마다 協會가 있는데 앞으로는 民間主導型으로 모두 조정되었으면 한다. 協會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登錄의 경우 일단 生産者단체인 協會를 통해서 도지사나 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취했으면 한다.

司 會 : 오교수님께서는 항상 養鷄業界의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法的으로 가능한지는 未知數이다. 적립금을 내려는 業者는 적립하는 方法에 있어서 飼料業界에서 거두어 달라는 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되고 또한 법적으로 租稅減免까지 받으면서 基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畜産振興基金의 支援 내용이 농가의 生産者지원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需給調節이기 때문에 완벽한 支援이 안되고 있으며 또 어려운 시기에 적립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民間生産者단체의 활성화 문제는 현재 농수산부의 畜産局이 관장

하는 協會의 數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동안 養鷄,養豚分野에 대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양계, 양돈 분야는 타분야보다는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로 더많은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양계, 양돈 분야에도 種鷄能力檢定所, 種豚능력검정소, 養豚經營安定, 養鷄調査事業 등에 支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변명삼아 말씀드리고 금년도 需給調節用으로 나간 금액이 700～800억 정도 이지만 소와 돼지에 支援하다 보니 다른 분야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基金의 수가 있어 通貨財政 運營上 문제도 있다.

초과 飼育賦課金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適正規模가 1,000마리 일 때 100마리를 더 사육할 경우 초과頭當 현 시세를 賦課金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種豚의 경우 國立種畜場의 種豚 分讓價格은 시중가격보다 10%가 높다. 그래서 등록된 種豚의 초과飼育分은 국립종축장의 配賦價格에다가 초과體重의 시중가격을 가산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어느 분이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趙鎭衡: 저희 養豚業者들은 生産 및 需給調節을 위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法으로 인해서 生産의욕이 저하되고 養豚을 그만 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양돈산업도 價格面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産業과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있다고 본다. 통계상으로도 專業農家는 항상 50% 정도의 生産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불황에 의한 생산이나 가격의 큰 변동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價格安定에 의한 현 시세로 頭當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수익기준으로 할 때 500두를 사육하려면 약 2억 정도를 投資해야 된다. 이와 같은 投資에 의해 수익성이 다른 産業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양돈산업의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施行令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大企業에 의한 大規模飼育을 억제하는 방법과 肉加工産業의 系列化 生産을 유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輸出業者의 自體生産 50%에 대한 특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肉加工産業의 自體生産 原料를 50%까지 허용된다면 肉加工의 범위를 카트 미트 (cut meat)까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

賦課金문제는 적정한 금액을 정해 賦課하는데 촛점을 두지 말고 賦課金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調査方法과 賦課基準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과 양축업자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고 위반사항이 적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司 會: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 주셔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충 요약해 보면 草食家畜은 規制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닭은 이미 專業化되어 있기 때문에 孵化場에서 生産調節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과 특히 돼지의 경우는 登錄基準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기준을 좀 더 낮추어 통계의 정확성 등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기준을 아주 높혀서 실시해 보다가 다시 시행령을 수정해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가급적 法에 의한 규제는 억제하고 誘引策 같은 것을 이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系列化 문제는 크게 논의는 안됐지만 企業畜産을 하는 몇몇 사람에게 육가공이나 수출의 특혜를 주지 말고 계열화 방향으로 유도해서 農民所得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種畜문제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種畜生産 및 配付體系를 확립해 보자는 정부측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자 및 교수님들과 가까운 시일에 의견을 다시 듣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한국축산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게 되어 축산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나 硏究院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다 편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附錄 1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榮 鎭

오늘 官界, 學界, 畜産團體, 그리고 養畜家를 각각 代表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번 改正된 畜産法을 시행함에 앞서 그 細部 施行令 및 施行規則을 마련하기 위한 協議會를 저희 硏究院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農水産業發展의 一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저희 硏究院은 그동안 農水産 部門에 관한 중요한 政策課題에 대하여는 특별히 각종 協議會를 개최하여 各界各層의 意見을 수렴하고 이를 政策立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갖 努力을 기울여 왔다. 畜産部門에 대한 이러한 協議會도 수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달에는 「農村地域綜合開發 심포지움」을 世宗文化會館에서 가진 바 있다.

오늘 斯界의 專門家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改正畜産法에 따라 畜産業의 登錄 및 許可와 種畜業의 登錄」에 관한 主題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畜産業의 건전한 發展을 위하여 改正된 畜産法의 細部 施行令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主要課題인 畜産業의 登錄 및 許可와 種畜業의 登錄에 관한 구체적인 事項을 검토하려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畜産現況을 돌이켜 보면 肉類의 消費量은 지난 1970 년에는 1 인당 年間 5.2 *kg*이던 것이 1983 년에는 13.3 *kg*으로 13 년 사이에 2.5 배나 늘어났으며 계란의 消費量은 77 개에서 125 개로 1.6 배 늘어났다. 또한 우유의 消費量은 1970 년에 1.4 *kg*이던 것이 1983 년에는 18.2 *kg*으로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3 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家畜飼育도 1970 년에 소는 131 만頭, 돼지는 112 만 1 천頭, 닭은 2,363만 3 천首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소는 221만5천頭, 돼지는 364만9천頭, 닭은 4,923만9천首로 각각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畜産의 급격한 擴大는 때때로 畜産物의 需給에 不均衡을 가져오고 그 生産量이 消費量보다 많아서 畜産物의 過剩生産이 일어나고 그 價格이 暴落하는 경우도 있었다.

흔히들 畜産人이 말하는 畜産波動은 이러한 需給의 不均衡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특히 中小 家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飼育擴大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畜産波動 現象이 자주 일어나 畜産을 不安定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農林水産業에 있어서 畜産의 比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 畜産物의 不安定 現象은 農家所得의 安定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 즉 1970년에는 畜産所得이 農業所得의 3.1%에 불과하여 畜産收入이 農家所得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지만 1983년에는 畜産所得이 農業所得의 25.4%나 되어 이제 畜産物의 價格變動은 직접적으로 農家所得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國民의 所得水準이 향상되면 畜産物의 需要는 더욱 增加될 것이고 이에 따라 農業에 있어서 畜産의 比重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인데, 이의 增加分을 農家所得의 增大에 連結시켜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畜産을 安定的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努力의 일환으로 금번 政府當局에서는 畜産法의 일부를 改正하여 生産者가 스스로 適正飼育規模를 유지함으로써 畜産物의 需給安定을 유지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금번 改正된 畜産法의 特徵은 畜産物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그 供給機能을 生産者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畜産業에 종사하는 자를 畜種別로 등록케 함으로써 畜種別 畜産物의 供給能力을 파악하고 그 生産量을 調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特徵이라고 하겠다.

改正 畜産法의 이러한 特徵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事項이 合理的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法을 시행함에 앞서 이 分野의 專門家이신 여러분의 高見을 듣고자 오늘 이 協議會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畜産業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

련되는 斯界의 專門家이신 만큼 여러분의 기탄없는 意見제시는 우리 나라 畜産業의 發展에 많은 參考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끝으로, 本協議會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非公開裡에 갖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協議會의 개최를 위하여 많은 協調를 아끼지 않으신 農水産部 關係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協議會를 통한 여러분의 기탄없는 討論이 우리 나라 畜産發展에 커다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1984 년 10 월 26 일

附錄 2

參加者 名單

座　　長：宋 燦 源（農水產部 前畜產局長）

討論參加者 (가나다順)

學　　界：文 八 龍（建國大 農大教授）
朴 英 一（서울大 農大教授）
吳 鳳 國（서울大 農大教授）
尹 熙 燮（建國大 農大教授）

研究機關：金 炯 華（農經研 首席研究員）
許 信 行（農經研 研究委員）

行政機關：金 基 泳（京畿道 畜政課長）
金 允 煥（慶南種畜場長）
李 英 薰（江原道 畜政課長）
韓 根 哲（忠南 홍성郡 畜產係長）
黃 一 奎（全北 畜政課 酪農係長）

團　　體：兪 相 烈（畜協中央會 企劃擔當理事）
柳 允 洙（한국酪農肥育協會長）
趙 鎭 衡（大韓養豚協會 副會長）
黃 永 球（한국種畜改良協會長）
黃 仁 玉（大韓養鷄協會專務）
黃 鍾 太（農協中央會 法規課長）

業　　界：金 榮 煥（마니育種社長）
金 儀 守（해인農場 會長）
權 五 杰（삼보牧場 社長）
尹 熙 辰（先進畜產 常務）

빈 면

畜産法施行令 改正方向

1984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 : 1979年 5月 25日 第5 - 10호

印刷處 : 株式會社 文 苑 社

723 - 6068, 722 - 6053